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926호 2015년 3월 13일(금)

훈 령

- 속초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2
- 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5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속초시장

(직인)

2015. 3. 13.

속초시 훈령 제674호

속초시 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속초시도로기반시설물협의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중 “교통행정과장,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재난산림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을 “도로교통, 토목, 건축물, 안전·방재, 상·하수도시설물 업무 관련부서장(소관업무가 각각 다른 부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 부서장 모두가 위원이 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적정보담당”을 “지적정보업무담당”으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구성 및 운영)</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통행정과장, <u>건설과장</u>, 도시디자인과장, <u>재난산림과장</u>, 상수도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p> <p>제7조(간사)</p> <p>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정보담당이 된다.</p> <p>② (생략)</p>	<p>제3조(구성 및 운영)</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도로교통, 토목, 건축물, 안전·방재, 상·하수도시설물 업무 관련부서장</u> <u>(소관업무가 각각 다른 부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 부서장 모두가 위원이 된다)</u>----- -----.</p> <p>제7조(간사)</p> <p>① -----, 간사는 지적정보업무담당이 된다.</p> <p>② (현행과 같음)</p>

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속초시장

(직인)

2015. 3. 13.

속초시 훈령 제675호

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

속초시 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공간정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부시장, 보안총괄, 문화·체육시설, 도로시설, 공간정보, 보건·위생, 도시계획, 건축물, 시설안전·방재, 자연녹지·공원, 상·하수도 업무 관련부서장(소관 업무가 각각 다른 부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 부서장 모두가 위원이 된다)으로 구성

제8조제2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공간정보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시건장치”를 “잠금장치”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제공한 때”를 “제공한 경우”로, “인수서”를 “인수 확인서”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을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외하고는 이를”을 “제외하고는”으로 하

고, 같은 조 제5항 중 “출력한 때”를 “출력한 경우”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을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행정자치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간정보의 분류기준(제12조제1항 관련)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항공사진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 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공 개 제 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삭제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 2차원좌표(經·緯度)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3차원좌표(經·緯·高度)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토지소유자, 법 제2조 4호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 단, 국정원장이 별도로 통보한 지역의 해상도 25~50cm급 항공사진은 일반인 대상 제공 또는 판매 시 기록유지를 생략할 수 있다.
위성영상	비공개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 내 시설 포함)이 노출된 3차원 위성자료
	공 개 제 한	○ 정밀보정된 2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30m 초과자료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이 노출된 해상도 4m 초과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해상도 90m 초과자료
	공 개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위성영상 및 3차원 위성자료 ○ 촬영 당시 위성자세정보가 포함된 일반지역 자료 (인터넷·내비게이션·핸드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수치지도	비공개	○ 축척에 관계없이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휴전선 접경지역내 시설 포함)이 포함된 지도
	공 개 제 한	○ 군사지도 ○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 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 -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의한 7대 지하시설물도 ·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송유관, 지역난방 - 아래 시설물이 표기된 수치지도 · 전력: 발전소, 변전소, 지상송전선, 송전탑 · 통신: 이동전화기지국(중계기 포함), 통신선로(지상 및 지하), 광케이블, 위성송·수신센터

공간정보	등 급	분 류 기 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저수탑, 취수탑, 급수탑, 수문, 댐, 지상상수관, 지상용수관, 양배수장, 정수장, 펌프장, 취수장, 가압장, 하수종말처리장 기호 · 가스·송유관: 지상가스관, 지상송유관, 저장소 · 맨홀: 공동구맨홀, 송유맨홀, 가스맨홀, 전기맨홀, 통신맨홀, 전화맨홀, 신호등 맨홀 그 밖의 맨홀(지형코드상의 기능이 미확인된 특정한 맨홀) · 특정건물: 교도소, 구치소, 가스공사지사 등 통제기능을 가진 지사 및 공급관리소 · 그 밖의 수송관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지도 (인터넷·내비게이션·핸드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 ※ 단, 1:1,000 이상 수치지도를 일반에 제공 시에는 인적사항 기록 유지
그 밖의 공간정보	비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이 노출된 3차원 공간정보 ○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의 명칭 및 속성 자료
	공 개 제 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의 명칭 및 속성자료 ○ 격자간격이 90m보다 정밀한 3차원 공간정보 중 3차원좌표가 포함된 자료
	공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표가 없는 일반지역 3차원 영상자료 ○ 3차원좌표가 포함된 격자간격 90m 이상 입체영상자료 ※ 토양·지질도, 도시계획도, 도로건설계획도, 지번도, 전자해도 등 ○ 도로명사업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보안관리 대상 시설, 시설명칭 및 시설명이 포함된 도로명 등을 제외한 새주소 안내도 ○ “비공개” 및 “공개제한” 이 아닌 공간정보

※ 국가보안시설과 군사시설은 각각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정하는 바에 따름

현 행	개 정 안
<p>민원봉사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재난산림관리과장, 상수도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시설안전·방재, 자연녹지·공원, 상·하수도 업무 관련부서장(소관업무가 각각 다른 부서로 나뉘어진 경우에는 각 부서장 모두가 위원이 된다)으로 구성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p> <p>① (생략)</p> <p>② 보안담당관은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한 때에는 제공일시, 자료의 내용 및 제공방법 등 관련사항을 별지제6호 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관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공간정보 이용신청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개제한 공간정보 <u>인수서</u>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6조(공개제한 공간정보의 활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p> <p>----- <u>제공한 경우</u> -----</p> <p>----- <u>인수 확인서</u> -----</p>
<p>제1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p> <p>① 시장은 본청·소속기관 및 동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목</p>	<p>제17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공개)</p> <p>① ----- ----- -----</p>

현 행	개 정 안
<p>적·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p>	<p>-----</p>
<p>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개할 수 있다.</p>	<p><u>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의 경우에는 미리 <u>행정안전부장관</u>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② -----<u>행정자치부장관</u>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 정보의 복제 등 제한)</p>	<p>제18조(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 정보의 복제 등 제한)</p>
<p>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u>제외하고</u>는 이를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p>	<p>①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u>제외하고</u>는 복제·복사 또는 출력할 수 없다.</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생략)</p>	<p>2. (현행과 같음)</p>
<p>3. (생략)</p>	<p>3. (현행과 같음)</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u>출</u></p>	<p>⑤ 공간정보를 복제·복사 또는 <u>출</u></p>

현 행	개 정 안
<p>력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p>	<p>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 복제·출력대장에 기록을 유지한다.</p>
<p>제20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p>	<p>제20조(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p>
<p>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행정자치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및 4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8조(준용)</p>	<p>제28조(준용)</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p> <p>5. (생략)</p> <p>6. (생략)</p>	<p>① (생략)</p> <p>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생략)</p> <p>4. 「행정자치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p> <p>5. (생략)</p> <p>6. (생략)</p>
<p>【 별표1 항공사진 분류기준 : 공개 】</p>	<p>【 별표1 항공사진 분류기준 : 공개 】</p>
<p>○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p>	<p>○ “비공개” 및 “공개제한” 대상 이외의 항공사진 및 영상, 3차원 입체자료</p>

현 행	개 정 안
<p>(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p> <p>※ 다만, 해상도 50센티미터급 초과 항공사진 제공 또는 판매시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 기록유지</p>	<p>(인터넷·내비게이션·휴대폰에는 좌표 표시 불가)</p> <p>○ 해상도 50cm급 초과 항공사진은 건물·토지 소유자, 법 제2조 4항의 관리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 또는 판매하고, 인적사항 및 사진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p> <p>*단, 국정원장이 별도 통보한 지역의 해상도 25~50cm급 항공사진은 일반인 대상 제공 또는 판매시 기록유지를 생략 할 수 있다.</p>